

# ‘가정헌법’ 분석을 통한 건강가정 요소 파악 및 사업 효율성에 관한 연구

: 수도권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

이 은 주(동국대 박사과정) · 전 미 경(동국대 부교수)

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2012년 현재 149개소가 운영 중이다(한국건강가정진흥원, 2012). 건강가정사업의 가족친화문화영역 중 선택 사업인 ‘가정헌법 만들기’는 가족구성원 간에 대화를 통해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·원칙, 추구하는 목표·가치를 만들고(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, 2009) 공유 및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. 운영지침의 내용구성실제는 건강가정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나 건강가정사업 수행 평가는 가정건강성 향상 보다는 사업 수행이 계획대로 잘되었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실정이다(정영금 외, 2010). 따라서 본 연구는 ‘가정헌법 만들기’ 사업진행현황을 살펴보고 가정헌법 내용분석을 통해 가족규칙의 양상 파악 및 가족이 인식하는 건강가정요소를 도출함으로써 ‘가정헌법 만들기’ 사업의 효율성 증진 방안 모색의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. 분석 자료는 2011년 한 해 동안 수도권(서울)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법무부 홈페이지(<http://www.lawnorder.go.kr/>)에 등록된 가정헌법 총 216건(세부조항 1,803건)과 총 7명의 실무자 면접 자료이며, 유영주(2004)의 한국형 건강가정척도 9개 하위요인을 준거로 건강가정요소를 도출하였다.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.

첫째, 사업진행현황에서 ‘가정헌법 만들기’ 지침 제시는 무응답을 제외한 ‘단순제공’이 36%로 가장 많았고 평가·환류는 7개 센터 중 1개 센터만 실시, 그 외 센터는 가족 자율에 맡기고 있었다. 실무자는 대부분 가정헌법 내용구성실제에 건강가정요소가 포함됨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평가·환류의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전문 영역이라는 부담감이 있었다. 둘째, 가정헌법 내용의 가족규칙체계는 가족구성원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규칙 1,051건(58.30%), 자녀 543건(30.11%), 부모 157건(8.70%), 형제자매 33건(1.83%), 부부 18건(1.00%), 조부모 1건(0.06%) 순이다. 자녀대상 규칙은 지시적이며 처벌위주의 규칙 빈도가 높았다. 셋째, 가정헌법의 건강가정요소 도출빈도는 ‘가치관·목표공유’(32.75%), ‘역할충실’(14.08%), ‘감사와 애정·정서’(13.08%), ‘유대의식’(12.59%), ‘공정적인 의사소통’(10.87%), ‘가족원에 대한 존중’(9.26%), ‘문제해결능력’(4.49%), ‘경제적 안정과 협력’(1.66%), ‘가족·사회와의 유대’(1.22%) 순이다. ‘가치관·목표공유’ 요소 빈도가 높은 것은 자녀가 지켜야 할 규칙(543건) 중 생활태도·습관규칙과 ‘역할충실’ 요소의 높은 빈도와 관계가 있다.

결론적으로 ‘가정헌법 만들기’는 건강가정요소를 참가가족에게 직접적·명시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실천적인 사업이지만 지침상세설명이 부족하고 대부분 가족의 자율성에 의존하며, 가정헌법 내용의 평가·환류가 매우 미흡하다. 그로 인해 참가 가족은 가정헌법을 단순여가활동 및 가족구성원의 행동규제 용도로 인식할 수 있다. 사업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 가족원 인식 변화 및 건강가정 관련 선행사업 실시 후, 연속사업으로 ‘가정헌법 만들기’를 진행하고 지침상세설명이 필수적이다. 또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가정헌법 내용에 대한 평가·환류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. 원가족의 지시적·폐쇄적·처벌적 가족규칙은 이후, 생식가족의 가족 건강성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(Havestsd et al, 1985; 이지민, 2011; 현인순, 2012)을 주목해야 한다. 본 연구는 건강가정사업의 일부 영역만 다루었지만 향후 다양한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.